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8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창원)2024누113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피고, 피항소인	○○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한○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1100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8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1. 17.자[1]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29,318,180원, 지방교육세 5,863,630원, 2018. 11. 18.자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2021. 11. 30.자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12,272,720원, 지방교육세 2,454,540원, 2021. 12. 1.자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2022. 5. 17.자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31,356,810원, 지방교육세 6,271,630원, 2022. 5. 18.자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 중 2017. 11. 28.자 및 2018. 1. 18.자 각 변경등기와 나머지 변경등기[2]는 동일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자본금증감 변경등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격

1) 원고가 항소장에서 '2018. 11. 7.자'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2017. 11. 28.자 및 2018. 1. 18.자 각 변경등기에 대한 부분은 제1심에서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8

이 동일함에도 각각 원고에 대한 2018. 10. 10.자 회생절차 종결을 전후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3].

2)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각 신주발행에 의한 출자전환 행위와 무상의 주식병합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를 사실상 하나의 행위로 보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증가한 자본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각 신주발행에 의한 출자전환 행위와 무상의 주식병합 행위를 별도의 행위로 보아 자본금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조세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 법률에 있어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고가 승소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나머지 변경등기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24. 11. 12.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2023. 12. 29. 법률 제19806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8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마196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동록'의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의 같은 규정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촉탁 등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부칙 제3조를 통해 위 규정은 '개정 법 시행 전에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였으나 시행 당시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여 시혜적으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8

②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회생법원의 촉탁이 아닌 원고의 신청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는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 소급적으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가 해당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 법규의 법문에도 부합하고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③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입법자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나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등기·등록 등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그중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 소급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것이 특별히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보기 어렵고,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되어 그 이후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마친 등기에 대하여도 당초 회생계획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등기였던 이상 마찬가지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가) 관련 법리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8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원고의 회생채무 등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토대로 후속으로 이루어진 무상 소각을 통하여 회생채무 등이 실질적으로 면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할뿐더러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자체를 전제로 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에 대하여 2015. 12. 29.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그 문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 참조)[4].

나) 구체적 판단

4)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5. 5. 15.자 및 2025. 6.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2025. 3. 19. 선고 2024누57683 판결을 주요 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서울고등법원 2024누57683 판결의 상고심은 위와 같이 결론을 달리하여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8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달리 비과세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 법률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일단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증가 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것이 병합될 예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본증가 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부인하기 어렵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 12. 23. 개정 지방세법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구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법원 촉탁으로 인한 등록면허세에서 회생절차 자체가 아닌 자본증가 등기, 회사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 변동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본래의 비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어,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을 회생절차 자체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한다'는 것이어서 그 입법자의 의사는 '회생절차 자체에 관한 등기, 가령 회생개시결정이나 회생인가결정 등에 대한 등기는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비과세 대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증자등기에 관하여는 실질적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한편 실질과세 원칙의 측면에서도 회생채무자인 주식회사가 출자전환 등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8

통해 증자하였다가 그 주식을 병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는 그 자체로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요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실질적 재산의 변동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실질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종적으로 재산권의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하는 경우 또는 액면발행으로 출자전환하였다가 전부 무상소각하는 경우 외에 할증발행으로 출자전환하였다가 무상감자하는 경우, 할증발행을 통해 출자전환을 하였다가 해당 신주를 무상감자하는 경우, 발행된 신주를 일부만 소각하는 경우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

판사 최○○

판사 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8

별지

부과내역

과세대상	부과내역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2017. 11. 28.자 변경등기	88,303,770원	17,660,750원	71,139,970원
2018. 01. 18.자 변경등기	4,086,020원	817,200원	3,247,660원
2018. 11. 17.자 변경등기	29,318,180원	5,863,630원	17,056,940원
2018. 11. 18.자 변경등기	40,200원	8,040원	27,390원
2021. 11. 30.자 변경등기	12,272,720원	2,454,540원	3,101,160원
2021. 12. 01.자 변경등기	40,200원	8,040원	14,170원
2022. 05. 17.자 변경등기	31,356,810원	6,271,360원	6,286,650원
2022. 05. 18.자 변경등기	40,200원	8,040원	12,070원